

2026년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공고

오랜기간 동안 부산에 본사를 두고, 고용창출, 인재양성,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명문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기업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‘2026년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계획’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9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공 모 명 : 2026년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(신규, 재인증)

* 명칭변경 :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→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

2. 인증기업 특전 (참고1)

○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우 및 지원

- ①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
- ② 시 중소기업 운전·육성자금 한도 및 이차보전 상향 우대 **확대**
- ③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반영 **확대**
- ④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**확대**
- 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(인증 후 3년간) **신설**
- ⑥ 시 주요 행사 및 시 주관 공연 관람 초청
- ⑦ 시·군·구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(기업당 자동차 1대)
- ⑧ 기업 임직원 문화복지 시설 관람 등 이용 우대 **확대**
(문화회관, 영화의전당, 체육시설, 민간문화관광플랫폼 홀릭잼, 텐퍼센트커피 등)
- ⑨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3. 자격요건 : 공고일 기준, 아래 조건(업력, 고용, 매출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 **완화** 조례 개정
-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
- 최근 3년간(2023~2025)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

4. 신청기간 : '26. 4. 9.(목)~4. 28.(화), 20일간 ※ 4. 28.(화) 24: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

* 추진일정



5. 선정결과 : '26년 6월초 선정결과 공고 ※ 인증현판 수여 일정 등 개별 안내

6. 선정방법 : 서류평가(정량·정성) 확인 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·의결

- 정량평가 : 업력(업종 유지 등), 경제적 기여도(장기고용유지, 영업이익 등)
- 정성평가 : 사회적 기여도(고용근로 조건, 안전보건조건, 사회공헌 등)
- 기타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검토

7. 신청 구비서류

-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공모 신청서·자체평가표(증빙서류) 각 1부
*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(부산소식 - 고시공고)에서 다운 받아 사용
- 대표자이력서 및 기업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-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
- 최근 3년간(2023~2025) 결산 재무제표 각 1부
- 최근 3년간(2023~2025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12월 기준) 각 1부

- 최근 3년간(2023~2025)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연도별 총 가입자 수 확인) 각 1부
- 최근 3년간(2023~2025)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
- 최근 3년간(2023~2025) 산업재해율확인서 각 1부
- 그 외 정성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각종 증빙서류 제출

- **(고용 및 근로조건) 2023~2025년 노사관계 제도화, 인재개발 노력 등 증빙자료(필수)**
 - 법률, 국제노동기준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서류
 -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서류(동아리, 교육, 포상 등)
 - 기타 노사관계, 인재개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서류 등
- **(안전 및 보건) 2023~2025년 보건 및 안전 전략 및 정책 등 증빙자료(필수)**
 -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략 및 정책 문서,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관련 서류(계획, 인증, 교육 등)
- **(사회공헌) 2023~2025년 사회 공헌, 봉사 활동 등 증빙자료(필수)**
 - 사회공헌 관련 전략 및 정책 문서,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관련 서류(기부, 장학제도, 봉사 등)
- **(탄소중립 이행) 2023~2025년 에너지 절감, 탄소중립 실천 등 관련 증빙자료**
 -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관련 활동 및 추진 내용 관련 서류(설비 개선, 에너지 절감 활동 등)
 - 기타 환경경영 및 친환경 활동 관련 자료 등(에너지 사용, 설비 개선, 환경 관련 인증 등 포함)

8. 제외대상

-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 기업 (참고2)

* 배제사유 : 형사처벌, 공정거래법 위반, 산업재해 명단공표 등

9. 접수방법 : 전자우편 lead@bepa.kr(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) 제출

- 신청서 : 한글파일, PDF파일 형식 각 1부
- 증빙서류 : PDF파일 형식 각 1부

10. 문 의 처 :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접수처

(☎ 051-600-1733, ☎ 051-600-1735)

【 참고1.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우대시책 현황 】

연번	구분	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
1	금융 지원	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상향	· 육성자금 : 2.3% (업체당 한도 20억원) · 운전자금 : 2.5% (업체당 한도 10억원)
2	명랑 일터 조성	문화회관·시민회관 이용 우대	· 문화회관, 시민회관 기획공연 등 할인 (10~50%, 공연별 상이) · 단체관람 우대 할인 등
3		시 운영 체육관 대관 지원	· 단합 행사 증빙 시 기업당 연 1회, 30만원 이내 예산 지원
4		동백상회 기업 단체 할인	· 기업 단체 상시 할인 10~20% (품목별 상이)
5		시 운영 미술관 유료 전시 관람료 감면	· 유료 전시 관람료 감면(전시별 상이)
6		영화의 전당 이용 우대	· 영화 관람료 7천원 · 공연 10~30%, 회원권 할인 우대
7		확대 부산 민간문화관광 플랫폼 '홀릭점' 이용 우대	· '홀릭점' 멤버십 이용료 1년간 면제 - 서핑 10%, 로컬브랜드 10~20%, 관광어트랙션 10~50% 할인 이용 * 이용 프로그램(콘텐츠) 지속 확대
8		'텐퍼센트커피' 단체 이용 우대	· 향토기업 임직원 단체 구매 시 지류쿠폰 10% 할인
9		산단 통근버스 노선 설계 우선 반영	· 향토기업 소재지 우선 노선 반영 (신설, 변경시)
10		브랜드 가치 제고	확대 방송(언론)사·대변인실 협업, 향토기업 우수성 홍보
11	확대 향토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 지원		· 명문향토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
12			· 수출, 일자리 등 상담회 시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전용 상담존 운영
13			· 국내외 바이어에 기업·제품 홍보
14			·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식 연 1회, 현장 애로 간담회(수시) 개최
15	규제 완화 · 지원 강화	신설 (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0조6항 개정) 부산 명문향토기업 도시가스 요금 우대 적용	· 향토기업 계열사 가스 사용량 통합 적용 - 산업용 5부제 요금 적용(할인)
16		확대 (조례개정) 부산 명문향토기업 자격요건 완화	· 신청자격(업력30년이상→20년이상) 기준 완화, 육성 규모 확대
17		신설 (조례개정) 부산 명문향토기업 행정편의 및 경영 안정	·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 도입(인증 후 3년간)
18		확대 부산 명문향토기업 행정편의 및 경영 안정	· 재인증 주기 연장(5년)

【 참고1.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】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(법인, 단체, 기관 등)
 -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향토기업 선정을 제한함
 -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
 -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할 수 있음.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신청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신청을 제한함
 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장)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※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공고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
- 공고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(법인)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선정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법인, 기관)